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7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한정애·박희승·김재원

이재강 • 윤후덕 • 조인철

문진석 · 김동아 · 박수현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 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계	즉시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계엄의 해제는 국</u>
	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u>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